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배재만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에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
-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를 제59조로 변경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규칙안은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조례의 목적에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를 제59조로 변경하는 내용 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 규칙을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